

#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5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9 .  
제출자 : 충주시장

## 1. 제안이유

분뇨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, 하수관거 정비로 분뇨 수집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집·운반대행자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폐업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분뇨 수집·운반수수료 인상(안 제27조) 별표 7

- 수거식 화장실(분뇨) 100L당 : 1,090원 ⇒ 1,190원(100원↑)
-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)
  - 기본요금(750L까지) : 10,800원 ⇒ 11,800원(1,000원↑)
  - 초과요금(100L마다) : 1,320원 ⇒ 1,450원(130원↑)

### 나. 감차·폐업지원 근거 마련(안 제26조)

###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

## 3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접수사항 없음.

## 4. 기타 참고사항 : 따로붙임

- 붙임 : 가.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나. 신구조문대비표  
다. 기타참고사항 (관계법령)

##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7조”를 “제15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아니하는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6조”를 “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부 받”을 “받”으로, “발생한 경우에는”을 “발생하였을 때에”로, “통보하여야”를 “통지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”을 “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”으로, “제1항 내지 제3항을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중 “규칙”을 “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소요되”를 각각 “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12조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“첨부하여”를 “붙여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제18조제1항 및”을 “제22조제1항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설치되었는지 여부”를 “설치되었는지”로, “통보하여야”를 “통지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”를 “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게”로 한다.

제14조제1호 중 “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”를 “해당 배수설비 때문에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한”을 각각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”를 “제1항에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고장으로 인하여”를 “고장으로”로 한다.

제18조제5항 중 “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,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”를 “방해되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

해서는 안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”를 “않고 점용한 자에게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4호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당해 공사에 소요되”를 “해당 공사에 드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소요되”를 “드”로 한다.

제26조제4항 중 “차액 일부 보전 또는 그 밖”을 “차액을 일부 보전하거나 감차지원금, 폐업지원금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감차지원금, 폐업지원금 등의 지원은 감정평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

제27조제3항 본문 중 “부과·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”를 “부과·징수 할 때에는 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일괄”을 “한꺼번에”로 한다.

제28조제2항 본문 중 “익일”을 “다음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아니하거나 제반”을 “않거나 모든”으로, “아니하는”을 “않을”로 한다.

제29조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제4호 중 “사유로 인하여”를 “사유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32조제1항 중 “부과·징수에 대하여”를 “부과·징수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세법」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”를 “등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6조”로 한다.

제33조제2항 중 “날로부터”를 “날부터”로 한다.

제35조의 제목 “(지방세법의 준용)”을 “(지방세기본법의 준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「지방세법」”을 “「지방세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36조의 제목 “(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)”을 “(시행규칙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, “시행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한다.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7의 수집·운반수수료 인상분은 201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7]

##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와 사용료(제27조 관련)

### 1. 수거식 화장실(분뇨)

부과기준	수수료 및 사용료(원)		
	수집·운반 수 수 료	공공 처리 시설사용료	계
100ℓ당	1,080	110	1,190

### 2.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)

부과기준	수수료 및 사용료(원)		
	수집·운반 수 수 료	공공 처리 시설사용료	계
기본요금 (750ℓ까지)	10,975	825	11,800
초과요금 (100ℓ마다)	1,340	110	1,450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① 법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.</p> <p>⑤ (생 략)</p> <p>제11조(시장의 공사시행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·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되게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하였으나,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</p>	<p>①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받----- ----- 발생하였을 때에 ----- 통지하여야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----- ----- 제1항부터 ----- 제3항까지를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시장의 공사시행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----- 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<u>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렇지 않다.</u>
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, 시공비, 지장물 이전비, 도로의 복구비,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<u>소요되는</u>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<u>인정하는</u>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 <u>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.</u>
제12조(배수설비의 시공) 배수설비의 시공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의한 종합면허 및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<u>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제12조(배수설비의 시공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렇지 않다.</u>
제13조(배수설비 준공검사)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·중·후의 사진을 <u>첨부하여</u>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건축법」	제13조(배수설비 준공검사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붙여</u> ----- ----- <u>제2</u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, 염료, CCTV 등을 이용 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<u>2조제1항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설치</u> <u>되었는지</u>----- ----- <u>통지하여야</u>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설치</u> <u>되었는지를</u> <u>검사하게</u> ----- -----.</p>
<p>제14조(배수설비의 유지 · 관리)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 ·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배수설비 설치자(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· 관리자를 말한다)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<u>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</u>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· 관리 하여야 한다.</li> <li>2. (생 략)</li> </ol>	<p>제14조(배수설비의 유지 · 관리)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----- ----- <u>해당 배수설비</u> <u>때문에</u> ----- -----.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15조(공공하수도 사용료) ① (생 략)</p>	<p>제15조(공공하수도 사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별표 2의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③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<u>의한</u>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<u>의한</u>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6조(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③ · ④ (생 략)</p> <p>⑤ 계측기의 <u>고장으로 인하여</u>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3월분의 평균 또는 전년 동기의 사용료 (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)로 부과·징수한다.</p>	<p>제16조(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도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<u>고장으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8조(하수배출량의 조사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공공하수도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<u>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</u>, <u>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	<p>제18조(하수배출량의 조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<u>방해되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-----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공공하수도 점용료) ① · ② (생 략) 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<u>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</u>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.	제19조(공공하수도 점용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 ③ ----- <u>않고 점용한 자에게-----</u> ----- -----.
제20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)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· 징수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 1. ~ 3. (생 략)  4. 오수발생량 1㎥/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6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<u>범위</u> 내 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 5. · 6. (생 략)	제20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) ① ----- ----- -----.  1. ~ 3. (현행과 같음)  4.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.  5. · 6. (현행과 같음)
②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 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<u>당해</u>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·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<u>아니한다</u> 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 <u>않는다</u> .
제21조(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“타공사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<u>당해 공사에</u> <u>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</u>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	제21조(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----- ----- <u>해당 공사에</u> ----- -----.

현 행	개 정 안
<p>② · ③ (생 략)</p> <p>제22조(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          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“타행위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<u>당해</u>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 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.</p>	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2조(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           ①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<u>해당</u>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
<p>② (생 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에 <u>소요되는</u> 전체비용으로 하며, 기존 공공 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 · 징수할 수 있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<u>드</u>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
<p>④ (생 략)</p> <p>제26조(분뇨수집 · 운반 대행) ① ~            ③ (생 략)</p> <p>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 · 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분뇨수집 · 운반수수료에 대한 <u>차액</u> 일부 보전 또는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6조(분뇨수집 · 운반 대행) ① ~           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           -----  <u>차액을</u>  <u>일부 보전하거나 감차지원금, 폐업</u>  <u>지원금 등</u>-----.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⑤ 제4항에 따른 감차지원금, 폐업</u>  <u>지원금 등의 지원은 감정평가 전문</u>  <u>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</u>  <u>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</u></p>



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5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불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	② ----- 날부터 ----- -----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35조( <u>지방세법의 준용</u> ) 사용료, 점용료, 원인자부담금, 분뇨·수집 운반수수료,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「 <u>지방세법</u> 」의 예에 따른다.	제35조( <u>지방세기본법의 준용</u> ) ----- ----- ----- 「 <u>지방세기본법</u> 」 -----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36조( <u>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</u> 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	제36조( <u>시행규칙</u> ) ----- ----- -----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7]	[별표 7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</b> (제27조 관련)	<b>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와 사용료</b> (제27조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수거식화장실(분뇨)	1. 수거식화장실(분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부과 기준</th> <th colspan="3">수수료 및 사용료(원)</th> </tr> <tr> <th>수집·운반 수 수 료</th> <th>공공 처리 시설사용료</th> <th>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0ℓ당</td> <td>980</td> <td>110</td> <td>1,09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부과 기준	수수료 및 사용료(원)			수집·운반 수 수 료	공공 처리 시설사용료	계	100ℓ당	980	110	1,090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부과 기준</th> <th colspan="3">수수료 및 사용료(원)</th> </tr> <tr> <th>수집·운반 수 수 료</th> <th>공공 처리 시설사용료</th> <th>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0ℓ당</td> <td>1,080</td> <td>110</td> <td>1,19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부과 기준	수수료 및 사용료(원)			수집·운반 수 수 료	공공 처리 시설사용료	계	100ℓ당	1,080	110	1,190								
부과 기준		수수료 및 사용료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집·운반 수 수 료	공공 처리 시설사용료	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0ℓ당	980	110	1,09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과 기준	수수료 및 사용료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집·운반 수 수 료	공공 처리 시설사용료	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0ℓ당	1,080	110	1,19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개인하수처리시설 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)	2. 개인하수처리시설 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부과 기준</th> <th colspan="3">수수료 및 사용료(원)</th> </tr> <tr> <th>수집·운반 수 수 료</th> <th>공공 처리 시설사용료</th> <th>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본요금 (750ℓ까지)</td> <td>9,975</td> <td>825</td> <td>10,800</td> </tr> <tr> <td>초과요금 (100ℓ마다)</td> <td>1,210</td> <td>110</td> <td>1,32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부과 기준	수수료 및 사용료(원)			수집·운반 수 수 료	공공 처리 시설사용료	계	기본요금 (750ℓ까지)	9,975	825	10,800	초과요금 (100ℓ마다)	1,210	110	1,320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부과 기준</th> <th colspan="3">수수료 및 사용료(원)</th> </tr> <tr> <th>수집·운반 수 수 료</th> <th>공공 처리 시설사용료</th> <th>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본요금 (750ℓ까지)</td> <td>10,975</td> <td>825</td> <td>11,800</td> </tr> <tr> <td>초과요금 (100ℓ마다)</td> <td>1,340</td> <td>110</td> <td>1,45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부과 기준	수수료 및 사용료(원)			수집·운반 수 수 료	공공 처리 시설사용료	계	기본요금 (750ℓ까지)	10,975	825	11,800	초과요금 (100ℓ마다)	1,340	110	1,450
부과 기준		수수료 및 사용료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집·운반 수 수 료	공공 처리 시설사용료	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본요금 (750ℓ까지)	9,975	825	10,8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초과요금 (100ℓ마다)	1,210	110	1,3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과 기준	수수료 및 사용료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집·운반 수 수 료	공공 처리 시설사용료	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본요금 (750ℓ까지)	10,975	825	11,8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초과요금 (100ℓ마다)	1,340	110	1,4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 관계법령

## □ 하수도법

**제41조(분뇨처리 의무)** 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 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<개정 2011.4.5, 2012.2.1>

②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오지·벽지 등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5>

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·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 (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)를 스스로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, 스스로 수집·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·도지사가 그 분뇨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·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<개정 2011.4.5>

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·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

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56조(휴업·폐업 등의 신고)** 분뇨수집·운반업자, 처리시설설계·시공업자,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56조의2(분뇨수집·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)** 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·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4.5]

## □ 하수도법 시행령

**제33조의2(분뇨수집·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)**법 제56조의2 제1항에서 "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·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. [본조신설 2011.9.30]

## □ 하수도법 시행규칙

제7조 삭제 <2012. 5. 15>

## 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**제9조(중수도의 설치·관리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·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

### **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**

2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
  3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
  4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  5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
  6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
 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 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
  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
- ③ 중수도의 시설·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,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④ ~ ⑧ 생략

## **□ 건축법**

제22조(건축물의 사용승인) ① 건축주가 제11조·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 [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(棟)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]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(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)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  
<개정 2013.3.23>

## **□ 지방세기본법**

제118조(이의신청), 제121조(청구기한의 연장 등), 제122조(보정요구), 제123조(결정 등), 제124조(결정의 경정), 제12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제126조(청구의 효력 등)